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19 선고 2020가단28776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명권

변 론 종 결 2021. 8. 24.

판 결 선 고 2021. 10.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의정부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2019. 6. 17.자 소외 F(이하 ‘소외인’이라 한다)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을 13,300,00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인에게 13,3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차전14776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 사법보좌관으로부터 2018. 8. 21. “소외인은 원고에게 1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26.부터 2009. 3.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8. 8. 27. 소외인에의 송달을 거쳐 2018. 9. 11. 확정되었다.

나. 피고(1936년생)는 소외인의 어머니인데, 2019. 6. 17. 소외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 월 임대료 570,000원, 임대차기간 2020. 2. 13.부터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가, 2020. 3. 2.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65,000,000원 증액하여 총 133,000,000원으로 하되, 월 임대료는 230,000원으로 낮추고, 임대차기간은 2020. 3. 2.부터 2022. 4. 30.로 고치는 내용의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20. 3. 2. H은행으로부터 119,7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소외 회사에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이를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I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33,000,000원 중 피고가 H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119,7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3,300,000원은, 피고가 고령인 사정 등에 비추어 분명히 딸인 소외인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9. 6. 17.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위 증여는 소외인의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라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소외인에게 13,3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전부 살펴봐도, 소외인이 2019. 6. 17. 피고에게 13,300,000원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소외인의 위 증여행위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